WTO/TBT 통보문

연 번	통보국가	분류	관련제품	통보일	의견수렴 기간	주 요 내 용
1	미국	식의약품	식품라벨링	07-9-3		마지막법령. 식품라벨링 안전조각지침 shell egg 라벨링 식약청은표시관에보이게" 냉장보관" 딱지있다던달걀상자안쪽에안전취급설명서을붙이게끔허용하는라벨링규정을개정이것은업계에많은유연성을제공하고소비자에게는계속적으로중요한정보를제공할수있게할 것임 최종안은2007년8월에유효함
2	미국	화학세라믹	햇볕타기방지제	07-9-3	11-26	처방전없이사용하는선스크린; 개정법령: 최종모노그래프의개정안미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처방전없이 사용되는OTC 제품의검토과정에선스크린제품의 최종모노그래프를개정하는개정안을발행했다.이개정은성분함량, 라벨링, UVB. UVA방출차단효과에 한시험요건등을담고있다 FDA는관련된여러새로운데이터와정보를분석하고, 의견수렴결과들을토한 후개정안을발행.
3	미국	바이오환경	오존고갈물질	07-9-3	9-26	성층권오존의보호: 2008년 EPA는 2008년 메틸브로마이드의중대한사용에대한 필요성을위하여메틸브로마이드의단계적철폐에대한예외를제안. 특별히EPA는2008 중요한사용예외에 대한자격을주는사용들을제안하고생산될량. 수입량. 2008년에이런사용에대한재고로부터의공급량에 대한자격을주는사용용도등을제안한다. EPA는오존층고갈시키는물질에대한몬트리얼의정서8차미팅(MOP)에서취해진최근의합의사항들을반영하기 위하여공기청정법의권한에의해조치를취하고있다. EPA는 중대한사용용도에대한리스트들에대하코덴트를취합하고, 이런용도들에단족시키는데필요한메틸브로마이드의양에대한EPA의 결정에대한의견을 모으고있다.
4	미국	생활용품	실내공기청정기	07-9-3	9-27	실내공기청정장치에서오존방출을제한하는규정을 채택하기위한공개의견수렴공지 캘리포니아주대기오염위원회(ARB)는 오존방출표준을채택하기위하여인증, 라벨링, 기록요구 캘리포니아주에서상업적으로판매하는실내공기청정기에 대한관련규정에대한공개의견청취를예고할것이다 제안된규정에는무엇보다도,오존방출농도0.05 parts per million(ppm) 을초과하지않도록기기들의시험과 인증을요구하고표준안을넘는기기들이캘리포니아주로반입되는것을금지하고있다
5	미국	생활용품	모피제품	07-9-3	-	모피제품의라벨링법령 뉴욕주는모피의류에대한제조와판매와관련된뉴욕주 일반상업법을개정했다. 법은올바르게라벨링되지

연 번	통보국가	분류	관련제품	통보일	의견수렴 기간	주 요 내 용
						않거나" faux fur." real fur" 같이라벨링되지않거나 모피양, 가치에있어서떤내용을붙이지않은제조 물이나소매상에서의판매, 수익을위해고의로적절한 라벨링이붙지않은제품을수입한사람, 회사, 동업등 을금지.
6	슬로베니이	기계건설	지진방지	07-9-3	11-9	Eurocode 8- 지진방지디자인-제2부- national annexEN 1998-2:2005의 서문에명시된것들에따른 SIST EN 1998-2:2006의 national annex본문서는다리의내진설 계에적용되며, 지진발생시에생명을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제정되었다.
7	슬로베니이	기계건설	지진, 진동	07-9-3	11-9	Eurocode8 - 내진구조디자인-제3부: 빌딩의진단평가 와 새로운장치- national annexSIST EN 1998-3:2005의 national annex는EN 1998-3:2005의 서문에규정된item 들에의한것, 교량의지진에있어서의내진설계에적 용 이것의목적은지진발생시에인간의생명을보호하 고, 피해를줄이며, 생명을구하는중요한것들이피해 가지않도록하는규정을담고있다.
8	슬로베니이	기계건설	빌딩의안전	07-9-3	11-9	건설산업-기술적인측면 빌딩의안전- 지진과진동의보호 Eurocode 8 - 내진설계빌딩-제4부.사일로, 탱크와파이 프라인-National annexSIST EN 1998-4:2006의national annex는EN 1998-4:2006의서문에있는items. 사일로, 탱크, 파이프라인들의건설에한필요기준과, 지진시 에상호작용내용등을제정
9	슬로베니이	기계건설	빌딩의안전	07-9-3	11-9	- 빌딩의보호와안전-지진과진동의보호 - 건설산업- 기술적인측면- 빌딩의요소: 굴뚝, 샤프트, 덕트 EURO 8: 빌딩의내진설계- 제6부- 타워, 마스트와굴뚝 들 - National annex SIST EN 1998-6:2005의 National annex는 EN 1998-6:2005의 서문에 나온Item들에 의 함. 본문서는타워와마스트, 굴뚝들의건설기준과지 진에의한상호작용요건등을제정
10	이스라엘	생활용품	운동장기구	07-9-3	11-3	SI 1498 제8장의개정1 : 운동장기구:운동장
11	페루	생활용품	완구와사무용품	07-9-3		법No 28376 독성물질이나유해한완구나사무용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금지하거나인증하는법령통보안은 13개제목, 36개조항, 8개과도안과최종규정그리고5 개 부록을포함하고있고, 유해완구와사무용품의판 매, 판매망, 수입,제조와관련한기술규정을담고있다
12	자메이카	바이오환경	담배	07-9-4	9-30	캐리비안연합표준, 담배와그포장라벨링표준관련 정보와관련정보의표시방법. 소매에팸배포장에포 함되어야할건강경고문구등을규정
13	태국	식의약품	분유	07-9-4	11-4	이유식과아기와어린이들에대한관련식품성분공식

연 번	통보국가	분류	관련제품	통보일	의견수렴 기간	주 요 내 용
14	태국	식의약품	치환유(Filled milk)와 성분(formula)	07-9-4	11-4	MOPH통보No. 157(B.E. 2537(1994))11.2.10.(a)의식품 라벨링은다음규정으로대체되어야한다" (a) 반드시 제공되어야할 내용은'- 아기의최고음식은엄마우유- filled milk 치환유(置換乳)탈지유에식물성지방을 첨가한 것)는 의사나 간호사 등에 의해 추천필요- uncompositional 성분은아기들에게유해하다3가지 내용은한프레임안에세로로표시되어야하며, 배경색 깔과대비되게, 첫번째성분들은분명하게읽을수있도록하고볼드체를사용해야한다.관련생산자와관매자들은발효이후180일 내에라벨링수정안을제출하고 현재의라벨링은1년간유효하다.
15	태국	식의약품	영양보충제	07-9-4	11-4	유아용치환유와관련성분함량MOPH 통보No 157 (B E 2537(1994)) 11.12 19(a)의 식품라벨링은다름과 같이바뀌어야한다(a)반드시표시되어야할 내용은 아기의최고음식은엄마우유- filled milk 치환유(置換乳) "탈지유에식물성지방을첨가한것"는 의사나간호사 등에의해추천이필요- uncompositional 성분은아기 들에게유해하다3가지내용은한 프레임안에세로로 표시되어야하며, 배경색깔과대비되게, 첫번째성분들은 분명하게읽을수있도록하고볼드체를사용해야한다. 관련생산자와관매자들은발효이후180일내에라벨링 수정안을제출하고현재의라벨링은1년간유효하다.
16	콜롬비아	화학세라믹	세라믹용기기구	07-9-4	11-30	영양보충제 관련한 MOPH 통보 No.293(B.E. 2548(2005)) ITEM 10(9) 라벨링에대한규정이다음과 같이변경 " (9) 알기쉬운내용" 적정량의비율..과" 방지나치료 효과가없다는내용을볼드체로배경색깔과대조적으로 표시해야함. 이런제품을수입하거나허가된생산자는시행일일년안에규정을따라야한다
17	미국	생활용품	개인안전장비	07-9-11		콜롬비아복지부와산업관광부의Resolution" 음식과 접하는유리, 유리-세라믹기구, 세라믹요리기구, 세라믹, 도기같은가정용용기와정형화된테이블, 주방용 기기등의기술규정발행" 내용은목적과적용범위; 관세법에서의관세부분;예외부분;정의, 두문자어와; 제품요건;최대허용치;적합성평가절차;적합증; 검사기관;페널티시스템;제조자와입자의등록; SDoC 그리고유효기간등을담고있다
						2007년 5월17일 발행된개인보호용구(PPE) 디자인 준을개정하는OSHA 개정안에대한비공식공청회일정공지 공청회에서일어난의향성의제출일자와공술서나서 류증거자료는공청회 전에 제출하도록정하였

연 번	통보국가	분류	관련제품	통보일	의견수렴 기간	주 요 내 용
						다.OSHA는 워싱턴D.C.에서2007.12. 4. 9AM에 비공식공청회을열것이며, 공술서를제출하고자하는당사자들은OSHA에 2007.10.1 전에서면의향서를알려야 한다. 또한, 비공식회의에서분이상발표를하려고 하거나, 공청회에서문서증거자료를제출하려고하는 당사자는2007. 11 1까지모든 자료를제출해야한다 전체문서는 http://a257 g akamaitech net/7/257/2422/ 01jan20071800/edocket access gpo.gov/2007/E7-17183 htmhttp://a257 g akamaitech net/7/257/2422/01jan20071800/edocket.access gpo gov/2007/pdf/E7-17183 pdf
18	케냐	생활용품	직물	07-9-11	11-11	KS 541 제2부: 2007 유니폼의직물에대한규격제2부 울이나부분적인울로만든직물(1st 개정) 케냐표준의첫번째개정으로부분울이나전체로만 들어진직물에대한기술요건이내부적인내용에대 한규정을담고있다.
19	케냐	생활용품	노트	07-9-11	11-11	KS 2044 . 2007 공책등문방구류규격 시험방법과규격등에대해규정
20	케냐	식의약품	차	07-9-11	11-11	차산업에서의규정 본 규정은차산업분야에서의조화와단일성을이루기 위한목적또한. 이해당사자들의가치를창출하기위해 서제정
21	케냐	농산품	개사료	07-9-11	11-11	KS 674-1 : 2007 개사료규정제1부. complete meal 개사료에대한요건을규정
22	케냐	농산품	고양이사료	07-9-11	11-11	KS 2132-1 : 2007 고양이사료. 규격제1부. complete meal 고양이사료에대한요건을규정
23	한국	식의약품	약초	07-9-11	11-11	한약초의중금속검출시험과규격법령의개정 - 23개전통약초의중금속최대치규정 - 진사(수은의원광)과인공황화수은에서의수용성수 은과비소함량최대치규정 - 약초제에서의납(Pb)과비소(As)의최대치규정
24	한국	전기전자	전기담요	07-9-11	11-11	전기용품안전기준의개정 K60335-2-17. 전기담요, 패드, 유사한유연한히팅기기 들에대한안전요건이다음과같이개정된다. 전기매트류발열체의최고온도를120℃로규정? 취침 모드스위치를설치해야함 감열발열선아닌경우에는면적에따라자동온도스 위치를강제부착해야함 감열발열선의온도특성시험추가 기타등

WTO/TBT 통보문

연 번	통보국가	분류	관련제품	통보일	의견수렴 기간	주 요 내 용
25	미국	생활용품	공기청정기	07-9-12		캘리포니아주대기오염방지위원회는실내공기청정기에대한제안된표준에대해정정안을발행하였다.내용은 http://www.arb.ca.gov/regact/2007/iacd07/correction.pdf 에서볼수있다
26	스위스	농산품	유기농산물	07-9-12	11-5	유기농재배와유기농제품의라벨링법령(1997.9.22)의개정 연방재무부의(1997.9.22, 910.181) 유기농법에대한법령의개정안' 도입개정안 · 사철농작물변환에대한규정 · 도살장검사규정· 주정부관리당국과인증기구의의무와권한의명확화 · 상용식품의단계적철폐(2008년말까지최대6%안)' 유기농법에대한FDE 법령 · 수입규제의개정· 제3국의인증기구리스트가제정되어야한다
27	미국	식의약품	와인, 주류	07-9-14	11-13	와인, 증류주와몰트음료의강제라벨링정보의변경 주류, 담배세와교역국(TTB)는 알코올음료에대한강제라벨링에대한기술규정을개정제안. 변경규정에의해현재사용되는브랜드레이블위에다니라용기에붙은다른레이블위에알코올내용기재를허용한다. 이러한규정에의해알코올음료의레이블링에 있어큰 유연성을제공할것이다. TTB 와인라벨링규정들은최근세계와인수출협회의멤버들에의해합의된와인라벨링표시에대한내용을준수할것임
28	브라질	식의약품	의약성분	07-9-14	8-31	결정안62(2007.7.2) - 아웃소싱생산, 품질관리와의약성분들의저장에대한기술규정 결정안(RDC) 199 2005.7.1과결정안(RDC) 245/2005 item 17 10을철회
29	브라질	생활용품	의류	07-9-14	9-22	정부안No. 80, 2007. 7. 19 INMETRO에서섬유제품의라벨링에대해발행
30	스위스	전기전자	가정용램프	07-9-14	11-10	에너지법령의개정, Annex 2.3규제개정안은최소 E Class 등급의에너지효율등급을충족시키는램프만시장에출시가능
31	유럽연합	화학세라믹	화학물질	07-9-14	12-14	Direc 67/548/EEC와Regulation(EC) No 1907/2006을개정하고화학물질과혼합물의포장과라벨링, 분류에대한유럽의회와집행위원회의규제제안안 제안안은소위화학물질에대한분류· 표지에대한세계조화시스템(GHS)이라는UN수준에서동의된분류기준과라벨링법을EU법안에포함하고있다 EU현법안을 검토하며라벨링. 유해심벌(픽토그램)과UN GHS 분류기준을도입. 2002.12월 GHS는UN 위험물운송에대한UN전문가위

연 번	통보국가	분류	관련제품	통보일	의견수렴 기간	주 요 내 용
						원회와 분류· 표지에대한 세계조화시스템(CE TDG/GHS)에 의해 합의되었다. 2003년7월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 의해 공식 채택되고 2005년에 개정되었다. 2002년9월4일 요하네스버그에 서 채택된이행계획에서 지속가능개발에대한세계정 상회의는나라들이가급적빨리GHS를 이행해2008년 까지완전한시스템을구현하도록하고있다 ~ 하략~
32	키르기즈스탄	기타	적합성평가	07-9-14		수입품의강제인증절차법령2006 1. 11 1 강제인증관련한수입품목들의필요요건과키르키즈 법에의한강제인증일치요건을확립 2 인증당국과정부기관에 당하지못한요건등을도 입하지않도록하기위함
33	키르기즈스탄	기타	적합성평가	07-9-14		적합성평가기관의인정법령#795 2006 11 161. 국가인 정시스템· NAS2 적합성인증기구의인정위원회3. 키르 기즈인정센터
34	키르기즈스탄	기타	주(사)감독절차규정	07-9-14		적합성평가: 시장감독주감독검사관련한절차와의 무를규정.
35	키르기즈스탄	기타	주(사)감독기관	07-9-14		주감독기관의책임과임무법령#473 2006.6.30적합성 평가: 시장감독: 검사기관의책임전체검사에서품 안전에초점을맞춘검사로큰 변화를함. 기능적으로 중복되는기관을없애고. 10개검사/감독기관의책임을 분명하게함. 1. 의료. 약품장비 2. 에너지와가스 3. 광산안전 4. 위생과유행병학 5. 건설과건축 6 검역서비스 7 공장안전 8 농업기계안전 9 화재안전 10. 자동차안전
36	키르기즈스탄	기타	WTO업무	07-9-14		WTO업무 이행관련한 책임부서관련법령# 291 2007 7.25경제개발과무역부의국제무역부서를WTO 업무공식부서로하고BT질의처로지정. 이에대한책 임을자세히규정 보건농림부는SPS 질의처로지정
37	파라과이	화학세라믹	농약	07-9-14		국립식물과종자품질및 건강서비스는2007 8.27 resolution No.371" 정형화된농업살충제의활성제의 운송수단의권한과등록규정의승인"국내에서살충제 의운송에사용되는운송수단의집행당국과조정
38	아르헨티나	생활용품	섬유	07-9-17	11-02	섬유제품의라벨링에대한메르코수기술규정통보된 규정에는섬유제품의성분을정밀하고분명하게식별

연 번	통보국가	분류	관련제품	통보일	의견수렴 기간	주 요 내 용
						하는방법과제품의보존과처리, 세탁에대한요건을 규정.
39	일본	식의약품	약	07-9-17	10-15	생물학적제품최소요구조건에대한부분개정새로승인된백신에대한표준을추가하여개정건강과위생을 위하여특별한주의를기울여야할약품들의제조과정, 특성, 품질, 저장등에대한규정확립
40	일본	식의약품	통조림식품	07-9-17	11-17	캔이나병에담은채소통조림에대한품질표시표준의 개정개정내용은 1 포장액체의정의를삭제, 이는캔이나병제품에액체를사용하는것으로잘알기때문 2. 라벨링하기힘든펄프나acinuss omittable 같은것들의크기나모양을라벨링하기 3. 이름항목을개정 4. 제4조의정의를간단히함
41	일본	식의약품	잼	07-9-17	11-17	잼(Jams)들에대한품질표시표준의개정개정내용은 1. 잼정의를보다분명하게함 2. 식품첨가제외에모든성분을강제적으로표시하도록함 3. 딸기를반으로조각내담근것도포함하도록함 4. 원래의과일모양을그대로 담고 있는 잼종류(preserves로 제조자가잼으로라벨링할의도가없는 잼은제외하기위하여"preserves"로의도한잼은 " preserves"로표시할수있도록함
42	일본	에너지물류	소비자제품	07-9-17	10-12	소비자제품안전법의해정순간가스가열기, 가스욕실 보일러, 기름보일러등경제산업성(METI)은 소비자제품안전법을개정. 개정내용은제조업자와수입업자들이 소비자제품에대한유지보수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하는유지보수시스템을구축하는것과소비자제품에 대해소비자의걷사요구를받아들여화재나가스폭발또는일산화탄소(CO)의중독같은심각한사고를일으킬가능성이있는제품이나, 전문기술지식이없는소비자에의해관리되기어려운소비자제품들에대한걷사를실시해주도록바뀌었다.
43	아르헨티나	식의약품	실량포장	07-9-18	11-2	본입안내용은실량검증에대한규정안이다. SI단위사용
44	한국	농산물	육류	07-9-18	11-18	등급과타입별고기부위를분류하는법안 통보문은육류시장의환경변화를반영하고육류분류를보다명확하게하기위해서이다. 식육의부위별· 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변화된식육유통환경을반영하여식육의소분할부위 명칭을새로신설하고(쇠고기 7개 부위, 돼지고기 3개

연 번	통보국가	분류	관련제품	통보일	의견수렴 기간	주 요 내 용
						부위). 식육의부위명칭표시방법을보다명확히하며, 「축산법시행규칙(농림부령제1556호, 2007.6.19.)의 개정내용을반영하여돼지고기의등급을표시하고자 하는경우에는육질등급으로표시하도록하고, 그동안 이고시를운용해오는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육의부위별명칭및분할정형기준에관한사항 (안제4조, 별표1 및별표2) (1) 10개부위의쇠고기소분할부위명칭및그에따른 분할정형기준을신설함 - 부채덮개살, 설깃머리살, 삼각살, 업진안창살, 치마양지, 앞치마살, 상박살, 앞갈비, 뒷갈비, 갈비살 ※ 소분할갈비부위를앞갈비, 중간갈비, 뒷갈비로 분함 (2) 5개부위의돼지고기소분할부위명칭및그에따른 분할정형기준을신설함 - 홍두깨살, 토시살, 오돌갈비, 갈비살, 다구리 (3) 그밖에소분할부위명칭의변경과분할정형기준을 보완하고뼈및근육의해부학적명칭을한글화함 나. 식육의부위명칭표시에관한사항(안제4조제3항 및제7조제2항) (1) 식육판매업소에서판매하는식육의부위명칭을제 4조제1항에따른대분할부위명칭으로표시하도록하 고, 소분할부위명칭을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소분 할부위명칭을표시할수있도록함 - 대분할부위내에서소분할부위가혼재된경우대분 할부위명칭다음에( )를이용하여그명칭을자율적으 로표시할수있도록함 (2) 수입된고기의경우에도안 제4조제3항에따라부 위명칭을표시하도록하되, 여러부위가혼재되어있는 등의사유로동 기준을준수할수 없는경우수출국에 서표시된부위명칭을표시하고, - 영업자가자율적으로많이포함된순서에따라해당 되는국내부위명칭을모두표시하는등의방법으로수 출국부위명칭에대한설명을덧붙일수있도록함 돼지고기의등급표시에관한사항(안제5조) 2007년 7월 1일부터돼지고기에도육질등급판정제도 가 도입됨에따라판매단계에서돼지고기의등급을자 율적으로표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육질등급(1+, 1, 2, 3, 등외(E등급))으로표시하도록함
45	한국	에너지물류	목재포장재	07-9-18		목재포장재질의동인관련마킹방법의변경국립식물검

연 번	통보국가	분류	관련제품	통보일	의견수렴기간	주 요 내 용
						역원은포장재질에대한IPPC마킹을변경하고자한다. 목재포장재생산자심벌과국립식물검역원에서승인한 생산자의등록일련번호가괄호로추가된다. (보기: ZZ-001)ZZ : 국립식물검역원에서승인한생산자의심벌 001 : 생산자의승인스탬프의일련번호법안발효까지는 신규마킹과구마킹이유효하며시행일은공지될것임. 본통보문은SPS위원회에도함께통보함
46	한국	식의약품	한약(약초)	07-9-18	11-18	약초에서걷출되는잔류이산화황의시험방법과규격의 개정- 이산화황의최대값이200, 500, 1000 과 1500 ppm에서30 mg/kg 으로변경- 60개약초를본시험방법에추가대상으로지정
47	남아공	에너지물류	자동차	07-9-19	11-7	Category 03 및04 자동차에대한강제규격의개정상품의 수송에적합하도록된 자동차등급03과 04에 대한 필요요건남아공에기존에등록되있은03과 04 등급의자동차에대해서도포함
48	미국	식의약품	의료	07-9-19		식품라벨링: 건강클레임
49	미국	화학세라믹	촉매변환장치	07-9-24	10-24	캘리포니아에서판매되는중고촉매변환장치와신규2차부품시장에대한규정을개정하는데있어공청회실시에대한공지캘리포니아주대기자원위원회(The Air Resources Board, ARB)는 신규2차부품비정품촉매변환장치에대한평가절차를1988년 8월 19일 채택하였다. 중간절차즉, 신규2차부품비정품촉매변환장치에 대한선택적인평가절차는자체진단장치II(OBD II)를 탑재한자동차의촉매변환장치에대한필요요건을요구하고2001년 12월에 효력이발생했다. 이규정은캘리포니아규범타이틀13 섹션2222(h)의 요구조건을 따르도록하고있다. ARB는2007년 10월 25-26일간에 신규2차부품시장과중고촉매변환장치규정과 시험절차에대한개정안에대한공청회를열고자한다.
50	네덜란드	생활용품	테마놀이공원기구	07-9-24	12-11	테마놀이공원장비에대한상품법령의개정(1997년에 WAS가 시행에들어갔을때10년의이행기간이 당시에 사용되던놀이공원의기구들에대해주어졌었다. 2007년 3월 27일로 기한이종료되며이행기간이유연하게끝나기위해서몇가지합의사항들이장비검사법령부분에대해이루어졌다. WAS개정안은이 합의에 법적근거를제공한다. WAS는원칙적으로, 이행기간이 끝나고처음으로검사할때, 97년에이미 시장에나온 놀이공원장비들에따라야할어떤기술규정이없었다. 이런구형장비들은97년이후에승인기준인장비기술 요건을충족시킬수 없다. WAS의제안 개정안은이런 구형놀이장비들에대한기술요건을 채택하는 것
51	리투아니아	식의약품	약품	07-9-24	11-24	보건부의의약품등록과제품포장라벨링요건에한

연 번	통보국가	분류	관련제품	통보일	의견수렴 기간	주 요 내 용
						법령제정의약품등록절차와티투아니아에판매승인 방법. 포장라벨링과포장리플릿에대한세부내용을담 고있다.
52	한국	농산물	축산품과유제품	07-9-24	11-24	축산품에대한라벨링표준개정안 [개정내용] - 문자크기를크게하고날짜마킹의위치를조정 - 아이스크림의제조일자가표시되어야함 - 과민증을일으키는식품리스트에새우를추가 - 1인분(per serving)에대한계산방법을제공 - 트랜스지방산에대한영양정보제공
53	뉴질랜드	생활용품	어린이완구	07-9-25	없음	위험한상품(납사용완구) 관련공지2007동법은어린 이완구에ISO 8124 3-2003 어린이완구표준를따라90 mg/Kg 이상의납을함유하고시수입과관매를금지
54	네덜란드	생활용품	테마놀이공원기구	07-9-25	12-11	테마놀이공원장비에대한세부법령으로안전규정에 대한것
55	핀란드	식의약품	주류	07-9-25	없음	주류법의개정 핀란드는태아에대한알코올의위험성과건강경고를 하는주류법의개정안에대해이미통보했다. 경고문구. 위치. 크기에대한특정순서에대한안은다음과같다. - 핀란드어나스웨덴어의문구로WARNING . 태아의 성장과 당신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를 인쇄- " WARNING'은최소3mm 이상의대문자로쓴다. - 경고가포장이나코르크바닥에표시되지않도록한다.
56	캐나다	식의약품	의약성분의처방	07-9-25	12-1	식품의약품규정의개정(Project No.1575-schedule F) 이 통보문은식품의약규정의schedule F의 제1부에의 약성분하나를추가한것에대한의견을제출할기회를 제공하기위한 공지[의약성분설명]흡입용인슐린 (Inhaled Human Insulin)은혈당이높은성인당뇨병환 자들을치료하기위해사용된다 흡입용인슐린은혈당 을조절하기위하여단독으로나또는입으로먹는반당 뇨병제제,또는장기또는중기주사인슐린등과함께사 용될수있는급속작용제이다 schedule F에는주사제는포함되어있지않지만, 흡입 용은추가할것이다. 흡입용인슐린은빠르게퍼진다 흡 입용인슐린의흡수는환자의적절한폐기능에달렸다. 폐기능은의사에의해치료전에판단되어서그이후로 는주기적으로관찰되어야한다. 복용한이래의사에 의해환자개개인에맞게처방되어야하며, 환자의폐기 능과약처방에의한반응상태에따라조정되어야한다. 지금까지효과를검증할만한충분한사용기간이없었 기때문에흡입용인슐린에대한장기효과에대해서는 알려지지않았다.

연 번	통보국가	분류	관련제품	통보일	의견수렴 기간	주 요 내 용
						schedule F 의 규제정도는의약품의위험도와비례한다. 의사의판단아래약이처방되기전에 적절한위험/이득에대한확신을가질필요가있고약물치료에대해 적절히모니터링해야한다. Schedule F는약물성분의 리스트며이것들의판매는 식품의약규정Sections C.01.041 - C.01.049에의해서조정된다 제1부는인간과 동물에사용되는약물. 제2부는인간에게사용되는 약물이다
57	캐나다	식의약품	약물처방	07-9-25	12-1	식품과약물규정의개정안(Project No 1550-schedule F) 식품의약규정의Schedule F 제1부에2개의약물을추가하여이에대한의견제출공지 [약물설명] 1. Acamprosate와소금은알콜환자의금주를관리하기 위해사용한다. 이약의안전하고효과적인사용을위해서의사는acamprosate 사용과관련한경고와위험도를고려하고특히콩팥과간에이상있는환자들에게주의한다. 이렇게정상적으로사용되어도심각한부작용을초래할수있다. 2. Varenicline and its salts는금연처방에사용. 안전하고효과적인사용을위해의사는경고문들을고려하고. 특히니코틴대체처방을하고있는환자들에게주의한다. 또. 간질이나심장병을가진환자들에게도주의해서사용한다.schedule F 의규제정도는의약품의위험도와비례한다. 의사의판단아래약이처방되기전에 적절한위험/이득에대한확신을가질필요가있고약물치료에대해적절히모니터링해야한다. Schedule F는 약물성분의리스트며이것들의판매는식품의약규정 Sections C.01.041 - C.01.049에의해서조정된다 제1부는인간과동물에사용되는약물. 제2부는인간에게 사용되는약물이다.
58	캐나다	식의약품	약물처방	07-9-25	11-28	식품의약규정개정안(Project No. 1526- Schdule F) [약물설명] 1. Micafungin and salts는줄기세포이식수술을한환자의 식도부위의진균감염을방지하거나치료하기위한 항진균성약이다. 의사의처한아래사용되어야하며. Micafungin은 정상적인치료처방에있어서도심각한 부작용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많은모니터링이필요하다. 2. Sitaxentan and its salts는폐동맥고혈압증(PAH) 치료용. 폐로들어가는혈관에높은혈압을가지는특징이 있는회귀한진행성질병이다. PAH전문가의진단이필

연 번	통보국가	분류	관련제품	통보일	의견수렴 기간	주 요 내 용
59	캐나다	식의약품	약물처방	07-9-25	11-28	요. 대우밀착된의료감독과모니터링이필요하며, 폐에 심각한효과를일으킬수있다. sitaxentan은정상정인 치료처방수준에서도원하지않는부작용을낳을수 있다 schedule F 의규제정도는의약품의위험도와비례한다. 의사의판단아래약이처방되기전에적절한 위험/이득에대한확신을가질필요가있고약물치료에 대해적절히모니터링해야한다. Schedule F는약물성분의리스트며이것들의판매는식품의약규정Sections C.01.041 - C.01.049에의해서조정된다 제1부는인간과 동물에사용되는약물, 제2부는인간에게사용되는 약물이다 식품과약물규정의개정안(Project No 1535-schedule F) 식품의약규정의schedule F 제2부에하나의약물을추가하고이에대한의견제출공지 [약물설명] 1. Calcium salts은hyperphosphatemia 치료용. 투석치료를받는콩팥환자의혈액속에서인(phosphate)의 농도가높아지는것을방지하기위해인결합제인칼슘(calcium)을사용한다. 의사개인별로특성에맞추어 처방을내릴때 사용가능함. 환자는또한다른약물과의 치료를요구하며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calcium salts는 정상적인치료처방에서도바람직하지 않는심각한부작용을일으킬수있다.schedule F 의규제정도는의약품의위험도와비례한다. 의사의판단아래 약이 처방되기전에 적절한위험/이득에대한확신을가질필요가있고약물치료에대해적절히모니터링해야한다 Schedule F는약물성분의리스트며이것들의판매는식품의약규정Sections C 01.041 - C 01.049에 의해서조정된다. 제1부는인간과동물에사용되는약물, 제2부는인간에게사용되는약물이다.
60	미국	식의약품	식품	07-9-25	10-24	식품성분의100% 성분테스트에대한예외요구청원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는 위의 청원에 의해 2007년 6월 25일 발행된잠정최종안에대한의견수렴 기간을연장한다 의견수렴기간은2007년 10월 24일까지. 잠정최종안은FDA가보건목적을위해취한식품성분관련한여러조치들중에 하나다 [DOCKET No 2007N-0186] Complete text of the interim final rule from 25 June 2007 can be found on the Internet at URLs.http://a257.g.akamaitech.net/7/257/2422/01jan20071800/edocket.access.gpo.gov/2007/07-3038.htm

연 번	통보국가	분류	관련제품	통보일	의견수렴 기간	주 요 내 용
						http://a257.g.akamaitech.net/7/257/2422/01jan20071800/edocket.access.gpo.gov/2007/pdf/07-3038.pdf Complete text of the extension notice from 17 September 2007 can be found on the internet at :http : //a257 g akamaitech net/7/257/2422/01jan20071800/edocket. access gpo.gov/2007/E7-18293 htmhttp· //a257 g akamaitech.net/7/257/2422/01jan20071800/edocket.access gpo gov/2007/pdf/E7-18293 pdf
61	오만	전기전자	펌프	07-9-26	11-26	IEC 60335-5-2-41 가정용전자기기-안전2부 : 펌프의특별요건들 본표준은승인방법으로서IEC 60335-5-2-41을채택오단/걸프기술기준의최종안은90º C를넘지않는액체에대한전기펌프의안전성을다루며, 가정에서사용되며, 정격전압이250 V를 넘지않는단상과기타전압에대해서는480V까지전압을사용한다
62	오만	전기전자	플라스틱도관	07-9-26	11-26	전기설치용플라스틱도관과피팅관련 오단/걸프기술규정의최종안No. GSO 3/33/2006 은 16mm - 50mm크기를가지는절연도체를보호하고배치하는데사용되는플라스틱도관(conduits)에 대한기술규정. 도관종류는평 성일반도관과단순표면이나주름진표면을가진휘는도관을포함한다
63	오만	전기전자	플러그와소켓	07-9-26	11-26	IEC 60884-2-4 : 플러그와소켓 가정용등에대한콘센트(outlet) 제2-4부 소켓과플러그에대한특별요건·SELV 콘센트이표준은IEC 60884-2-4를 인증방법으로 채택하였다.최종안은가정용으로실내에서나실외에서사용되는플러그나소켓에대한것으로서6V d.ca.나c.(50/60 Hz) SELV 정격전류6A에대한제품들에적용
64	미국	에너지물류	자동차	07-9-27	없음	신규자동차의대기오염물질방출표준제안안 2011년 모델로시작해계속해매년어떤자동체데이커나딜러등은캘리포니아대기오염표준(California CCR Title 13)에적합하지않은어떤자동차도판매, 렌트, 리스, 등록을할 수없다. 대상자동차는뉴멕시코주의승용차, 경· 중트럭등이다.
65	미국	화학세라믹	접착제등	07-9-27	10-19	접착제, 봉합제, 프라이머, 솔벤트등 대기오염법에대한주정부이행계획을개정하고규정을 채택하는내용공지 코네티컷주는접착제나봉합제, 프라이머, 솔벤트등에서 나오는휘발성유기성분(VOCs)의 방출을규제하기로함. 제안안은코네티컷주에판매되는접착제나봉합제, 프라이머의VOC함량을제한하는제조와판매규정을통해서, 또한산업용에우선적으로사용제한을가함으로써VOC 방출량의감소시키고자한다.